

##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실태 평가지표

□ 지표 적용대상 : '25년 운영실적에 대한 '26년 평가

□ 평가항목

- 수출사업 평가(60점) : 수출 비중 관련 항목
- 조직운영 평가(20점) : 수출단지 운영 효율성 관련 항목
- 안전성 및 품질 평가(20점) : 품질인증 등 안전성 관련 항목
  - 화훼류는 품질평가(10점, 총점 90점)만 시행 후 100점으로 환산
  - \* 예시) 화훼류 단지가 총점 80점, 가점 5점 득점 시, 총점은 89점으로 환산하고 가점 5점을 더해 최종 94점 득점

□ 평가지표 세부항목

평가지표	세부항목	평가등급	배점
수출사업 평가(60)	○ 수출액 규모	5등급	10
	○ 전년 대비 수출물량 증가율	"	10
	○ 수출 사업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적정성	"	10
	○ 전체농가 대비 수출 농가 비율	"	10
	○ 총 매출량 중 수출량 비율	"	10
	○ 수출통합조직 대상 출하의무계약 이행률	"	10
조직운영 평가(20)	○ 전문생산단지 규모	5등급	5
	○ 공동선별 비중(%)	"	5
	○ 계약재배 수출 비중(%)	"	5
	○ 자조금 조성 및 운영	-	5
안전성 및 품질 관리 평가(20)	○ GAP 인증 농가 비율(%)	5등급	5
	○ 연 1회 이상 안전성 검사 실시 농가 비율(%)	"	5
	○ 안전성·품질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참석 (조직화 교육 포함)	"	5
	○ 농집 활용 안전성 및 품질 관리 - 안전성 전담 관리자(농집 코드) 지정 여부(1점) - 농약·비료 활성제 등 기록관리-영농일지(2점) - 단지 생산 및 수출실적 입력(2점)	-	5
계			100 (화훼류 90)

\* 평가항목 및 배점은 해당 연도 평가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음

□ **평가등급별 점수**

- 15점 항목 : 수(15), 우(12), 미(9), 양(6), 가(3)
- 10점 항목 : 수(10), 우(8), 미(6), 양(4), 가(2)
- 5점 항목 : 수(5), 우(4), 미(3), 양(2), 가(1)

□ **가점(최대 15점 한도)**

<b>10점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출통합조직 참여</li> <li>○ 글로벌 GAP·할랄·ISO·유기농* 인증단지</li> <li>* 수출국 유기농 인증 포함</li> <li>○ 농촌진흥청 시험포사업 연계단지</li> </ul>
<b>5점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단지 간 통합을 통해 규모화 및 내실화 유도 단지</li> <li>○ aT 주관 조직화 교육 지원사업 참여 단지</li> <li>○ 친환경 화훼생산(MPS)·HACCP·GMP·무농약 인증단지</li> <li>○ 전국단위 품목별 생산자협의회 참여 단지</li> <li>○ 소속 농가의 80% 이상이 농집 영농일지를 월 4회·3개월 이상 작성한 경우</li> <li>* 영농일지 작성 품질은 코디 교육지원비 지급 기준 준용</li> <li>○ 상기 조건을 만족하면서 입력 충실도가 높은 경우</li> </ul>
<b>3점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부(검역본부 등) 및 지자체(소속기관 포함) 주관 교육, 또는 컨설팅 참여 단지</li> <li>* 경남농업기술원 ATEC(농업기술교육센터), 국제공인 PTC(농업실습교육) 등</li> <li>○ 해외전문가초청 컨설팅 시행 단지</li> <li>* aT 조직화 교육 포함, 정부·지자체 시행 교육·컨설팅과 중복 적용 불가</li> <li>○ 지열 냉·난방, 목재 펠릿 등 에너지 이용 효율화 운영단지</li> <li>○ 지자체 단위 품목별 생산자협의회 참여 단지</li> </ul>

□ **감점(한도 없음)**

<b>10점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출농산물 안전성 및 수출 검역요건 위반에 따라 제재받은 단지(농가 포함)</li> <li>○ 농식품 수출 공정거래 위반에 따라 제재받은 단지(농가 포함)</li> <li>○ 농집 영농일지 작성(월4회, 3개월) 농가비중이 50% 미만인 단지</li> </ul>
<b>5점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타 단지와의 농가중복 등 관리 소홀 단지</li> <li>○ 운영실태평가 시까지 농집을 통해 단지 현황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단지</li> <li>○ 평가 시 단지 전체농가 현황을 미제출한 단지(수출 참여 농가만 제출한 단지)</li> </ul>

[별표 3]

##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실태평가 세부 기준

※ '25년 운영실적에 대한 '26년 평가

### 1. 수출사업 평가 (60점)

#### 1-1. 수출액 규모 (10점)

○ 기준 : 단지 지정품목 '25년 수출금액

구 분	평가 기준				
	수(10)	우(8)	미(6)	양(4)	가(2)
수출액	USD 1백만 이상	300천 이상 ~ 1백만 미만	50천 이상 ~ 300천 미만	10천 이상 ~ 50천 미만	10천 미만

#### 1-2. 전년 대비 수출물량 증가율 (10점)

수(10)	우(8)	미(6)	양(4)	가(2)
4% 이상	3% 이상 ~ 4% 미만	2% 이상 ~ 3% 미만	1% 이상 ~ 2% 미만	1% 미만 (음수 포함)

○ 수출액 USD 1백만 이상은 1-2 지표 “수” 부여

#### 1-3. 수출 사업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적정성 (10점)

구 분	평가 기준
수(10)	연간 수출사업 계획(연 1회) 및 분기별 추진현황(연 4회)을 모두 제출하고, 내용이 적정한 경우(공란 없고, 내용 충실)
우(8)	연간 수출사업 계획(1회) 및 분기별 추진현황(연 4회)을 모두 제출했으나, 내용이 미흡한 경우
미(6)	연간 수출사업 계획(1회)을 제출했으나, 분기별 추진현황(연 4회)을 한 번이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
양(4)	연간 수출사업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분기별 추진현황은 1번 이상 제출한 경우
가(2)	연간 수출사업 계획(연 1회) 및 분기별 수출현황(연 4회)을 모두 제출치 않은 경우

#### 1-4. 전체농가 대비 수출 농가 비율(%) (10점)

구 분	평가 기준				
	수(10)	우(8)	미(6)	양(4)	가(2)
공 통	80% 이상	80 미만 ~ 60 이상	60 미만 ~ 40 이상	40 미만 ~ 20 이상	20% 미만

#### 1-5. 총 생산량 중 수출량 비율 (10점)

구 분	평가 기준				
	수(10)	우(8)	미(6)	양(4)	가(2)
공 통	90% 이상	90% 미만 ~ 70% 이상	70% 미만 ~ 50% 이상	50% 미만 ~ 30% 이상	30% 미만

### 1-6. 수출통합조직 대상 출하의무계약 이행률 (10점)

구분	수(10)	우(8)	미(6)	양(4)	가(2)
공통	90% 이상	90% 미만 ~ 70% 이상	70% 미만 ~ 50% 이상	50% 미만 ~ 30% 이상	30% 미만

- 연도 중 신규지정 단지는 평가점수 중간점(미) 부여
- 통합조직 미결성 품목은 1-6 지표 미평가, 1-2 및 1-5에 각각 15점 배점

## 2. 조직운영 평가 (20점)

### 2-1. 전문생산단지 규모 (수출재배면적: 수출 참여 농가 재배면적 기준) (5점)

구분	평가 기준					
	수(5)	우(4)	미(3)	양(2)	가(1)	
채소류	파프리카	10만㎡ 이상	10 미만 ~ 9 이상	9 미만 ~ 8 이상	8 미만 ~ 7 이상	7 미만
	배추	22	22 ~ 20	20 ~ 18	18 ~ 16	16
	월동무	22	22 ~ 20	20 ~ 18	18 ~ 16	16
	양배추	22	22 ~ 20	20 ~ 18	18 ~ 16	16
	양파	22	22 ~ 20	20 ~ 18	18 ~ 16	16
	마늘	22	22 ~ 20	20 ~ 18	18 ~ 16	16
	토마토(방울)	24	24 ~ 22	22 ~ 20	20 ~ 18	18
	딸기	26	26 ~ 24	24 ~ 22	22 ~ 20	20
	멜론	91	91 ~ 83	83 ~ 75	75 ~ 67	67
	참외	25	25 ~ 20	20 ~ 15	15 ~ 10	10
	고추류	4.5	4.5 ~ 4	4 ~ 3.5	3.5 ~ 3	3
	오이	6	6 ~ 5	5 ~ 4	4 ~ 3	3
	들깨잎	16	16 ~ 14	14 ~ 12	12 ~ 10	10
아스파라거스	4.7	4.7 ~ 4.2	4.2 ~ 3.7	3.7 ~ 3	3	
과실류	배	146만㎡ 이상	146 미만 ~ 133 이상	133 미만 ~ 121 이상	121 미만 ~ 108 이상	108 미만
	사과	169	169 ~ 154	154 ~ 140	140 ~ 125	125
	유자	85	85 ~ 78	78 ~ 70	70 ~ 63	63
	단감	100	100 ~ 91	91 ~ 83	83 ~ 74	74
	포도	40	40 ~ 37	37 ~ 33	33 ~ 30	30
	복숭아	25	25 ~ 23	23 ~ 21	21 ~ 19	19
키위(참다래)	25.4	25.4 ~ 23.3	23.3 ~ 21.2	21.2 ~ 19	19	
버섯류	팽이버섯	94천병/일 이상	94 미만 ~ 83 이상	83 미만 ~ 72 이상	72 미만 ~ 60 이상	60 미만
	새송이버섯	47	47 ~ 42	42 ~ 37	37 ~ 30	30
	만가닥버섯	28	28 ~ 25	25 ~ 22	22 ~ 18	18
곡류	쌀	968㎡ 이상	968 ~ 374	374 ~ 220	220 ~ 50	50 미만

구분	평가 기준					
	수(5)	우(4)	미(3)	양(2)	가(1)	
화훼류	장미	14만㎡ 이상	14 미만 ~ 13 이상	13 미만 ~ 11 이상	11 미만 ~ 10 이상	10㎡ 미만
	백합	12	12 ~ 11	11 ~ 10	10 ~ 9	9
	국화	10	10 ~ 9	9 ~ 8	8 ~ 7	7
	선인장	9	9 ~ 8	8 ~ 7	7 ~ 6	6
	양란(심비디움 등)	8	8 ~ 7	7 ~ 6	6 ~ 5	5
수국	9	9 ~ 8	8 ~ 7	7 ~ 6	6	

\* 단지 전체면적/수출 농가 면적 모두 기재, 보고 단위는 ㎡로 통일(평, ha 표기 금지)해야 하며, 버섯류의 경우 '일일 입병 수', '연간 입병 수', '㎡' 동시 제출

## 2-2. 공동선별 비중(%) (5점)

구 분	평가 기준				
	수(5)	우(4)	미(3)	양(2)	가(1)
공 통	80% 이상	80 미만 ~ 60 이상	60 미만 ~ 40 이상	40 미만 ~ 20 이상	20% 미만

- 단지 소속 농가의 확인 가능한 생산물량 중, 단지 소속 선별장에서 선별된 물량만을 대상으로 평가. 단지가 생산 및 선별량 증빙 미제출 시 “가” 평가
- 단지 내 복수의 선별장이 존재할 경우, 모든 선별장의 선별(품위 및 가격) 기준이 통일되어 있을 시에만 평가하며, 해당 증빙 미제출 시 “가” 평가

## 2-3. 계약재배수출 비중(%) (5점)

구 분	평가 기준				
	수(5)	우(4)	미(3)	양(2)	가(1)
공 통	80% 이상	80 미만 ~ 60 이상	60 미만 ~ 40 이상	40 미만 ~ 20 이상	20% 미만

## 2-4. 자조금 조성 및 운영 (5점)

- 의무자조금이 구성된 품목의 경우, 해당 품목으로 지정받은 단지가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되어 있을 시 만점(5점)을 부여하고, 미가입 시에는 점수 미 부여(0점)
- 임의자조금 및 자체자조금 품목의 경우, 아래의 기준 적용

구 분	평가 기준	
	유	무
① 자조회칙 유무(1점)	1점	0점
② 자조금 규정 유무(1점)	1점	0점

\* 자조회비 조성(납부금액 산정, 납부방법 등), 운영·결산 관련 조항 등이 있을 시 인정

구 분	평가 기준	
	운영	미운영
③ 자조금 운영 활성화(1점)	1점	0점

\* 자조회비가 상기 회칙·규정에 따라 조성 및 운영이 되고, 결산보고서가 있을 시 인정

구 분	평가 기준		
	100%	100 미만 ~ 50 이상	50% 미만
④ 자조금 납부이행(2점)	2점	1점	0점

\* 단지소속 모든 농가(수출·내수 무관)의 평가연도 납부 내역이 확인될 경우 인정

### 3. 안전성 및 품질 관리 평가 (20점)

#### 3-1. GAP 인증 농가 비율 (%) (5점) ※ 화훼류 제외

구 분	평가 기준				
	수(5)	우(4)	미(3)	양(2)	가(1)
공 통	50% 이상	50 미만 ~ 40 이상	40 미만 ~ 30 이상	30 미만 ~ 20 이상	20% 미만

#### 3-2. 연 1회 이상 안전성 검사 실시 농가 비율 (%) (5점) ※ 화훼류 제외

구 분	평가 기준				
	수(5)	우(4)	미(3)	양(2)	가(1)
공 통	90% 이상	90 미만 ~ 80 이상	80 미만 ~ 70 이상	70 미만 ~ 60 이상	60% 미만

#### 3-3. 안전성·품질 교육 및 컨설팅 연 1회 이상 참석 농가 비율 (5점)

구 분	평가 기준				
	수(5)	우(4)	미(3)	양(2)	가(1)
공 통	30% 이상	20% 이상 ~ 30% 미만	10% 이상 ~ 20% 미만	50% 이상 ~ 10% 미만	5% 미만

- 정부·지자체· 대학 등이 주최한 교육·컨설팅(공문, 수료증 등 증빙 必) 참석 실적, 외부 전문가초청 교육·컨설팅의 경우도 인정 가능(교육·컨설팅 내용 및 초청 강사 적합성 별도 판단)하며, 단지 단순 내부회의 실적은 불인정, aT 조직화 교육 지원사업 참여 및 결과 보고 완료 시 해당 평가 “우” 등급 부여하고 조직화 이외 추가 참석실적이 있을 경우 “수” 등급 부여

#### 3-4. 농집 활용 안전성 및 품질 관리 (5점)

구 분	평가 기준		비고
	지정	미지정	
① 안전성 전담 관리자 지정	1점	0점	농집 코디 지정 시 인정

구 분	배점	평가 기준				
		수(4)	우(3)	미(2)	양(1)	가(0)
② 농약 및 비료 활성제 등 기록관리 농가 비율 * 코디 대행 입력 포함	2	단지 소속 농가가 100 농가 이상일 경우				
		40% 이상	40 미만 ~30 이상	30 미만 ~20 이상	20 미만 ~10 이상	10% 미만
		단지 소속 농가가 100 농가 미만일 경우				
		60% 이상	60 미만 ~50 이상	50 미만 ~40 이상	40 미만 ~30 이상	30% 미만
③ 단지 생산 및 수출 실적 입력	2	3개월 이상 월별 생산량 또는 수출량 입력 농가 비중				
		40% 이상	40 미만 ~30 이상	30 미만 ~20 이상	20 미만 ~10 이상	10% 미만

- 전년도 9월 이후 신규지정된 단지는 “농집활용 안전성 및 품질 관리 평가(5점)” 제외 후 100점 환산(해당 실적이 있을 시 단지 선택에 따라 포함하여 평가 가능)

#### 4. 가감점 (가점 한도 15점, 감점 한도 없음)

구분	항 목	배 점
가점	○ 수출통합조직 참여 단지	10
	○ 농촌진흥청 시험포 사업 연계단지	10
	○ 글로벌 GAP·할랄·ISO·유기농(수출국 포함) 인증 중 1개 이상 인증획득 단지	10
	○ 소속 농가의 80% 이상이 농집 영농일지를 월 4회·3개월 이상 작성한 경우 ○ 상기조건을 만족하면서 입력충실도가 높은 경우	5
	○ 단지 간 통합을 통해 규모화 및 내실화 유도 단지	5
	○ aT 주관 조직화 교육 지원사업 참여 단지	5
	○ 친환경 화훼생산(MPS)·무농약·GMP·HACCP 인증 중 1개 이상 인증획득 단지	5
	○ 전국단위 품목별 생산자협의회 참여 단지(정부 지정)	5
	○ <b>신품종 사업 참여 단지</b>	5
	○ 정부(검역본부 등)·지자체(소속기관 포함) 주관 교육, 또는 컨설팅 참여 * ATEC(농업기술 교육센터), 국제공인 PTC(농업실습 교육) 등 포함	3
○ 지열 냉·난방, 목재 펠릿 등 에너지 이용 효율화 운영단지	3	
감점	○ 수출농산물 안전성·검역요건·수출 공정거래 등의 위반에 따라 제재받은 단지	10
	○ 농집 영농일지 작성(월 4회·3개월 이상) 농가 비중이 50% 미만인 단지	10
	○ 타 단지와의 농가 중복 등 관리 소홀 단지	5
	○ 운영실태평가 시까지 농집을 통해 전년도 단지 현황 변경사항을 미신고할 경우	5
	○ 평가 시 단지 전체농가 현황 미제출 단지(수출 참여 농가만 제출한 경우)	5